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9월 8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9월 8일

3. 제안이유

-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-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중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.
 -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: 신체장해 1급 내지 14급
 - 고엽제후유의증환자 : 질병구분에 따라 고도·중등도·정도장애 해당자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국가보훈처의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표준안에 의하여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증급 판정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서,
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본 조례 시행에 따른 효과와 도세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문제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